

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[별표 3]

설명 사항(제12조제1항 및 제4항 관련)

1. 보장성 상품: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주된 위험보장사항 · 부수적인 위험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 · 보험금

나. 보험료 납입기간

다. 해약을 하거나 만기에 이른 경우에 각각 금융소비자에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(이하 “환급금”이라 한다) 및 산출근거. 이 경우 그 금액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.

라. 일반금융소비자 또는 피보험자가 「상법」 제651조에 따른 고지의무 및 같은 법 제652조에 따른 통지의무를 각각 위반한 경우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

마. 보험금(공제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지급받는 자를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(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방법을 포함한다)

바.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

1) 영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

가) 만기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보장하는 계약인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가 중도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

나) 금융상품의 구조 및 자산운용 방식

2) 「보험업법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취급하는 보장성 상품: 판매 · 제공 또는 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매와 별도로 일반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취소할 수 있거나 그 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사실

3) 피보험자가 생존 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(공제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: 다음의 사항

가) 일반금융소비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(이하 “적용이율”이라 한다) 및 산출기준

나) 보험료 중 사업비(계약을 체결 · 관리하는데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등을 뺀 일부 금액만 특별계정에서 운영되거나 적용이율이 적용된다는 사실 및 그 사업비 금액(적용이율이 고정되지 않는 계약에 한정한다)

4) 65세 이상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및 이에 준하는 공제: 65세 시점의 예상보험료 및 보험료의 지속납입에 관한 사항

5) 해약환급금(금융소비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지급되지 않는 보장성 상품: 위험보장 내용이 동일하지만 해약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는 다

른 보장성 상품

6) 일반금융소비자에 배당이 지급되는 보장성 상품: 배당에 관한 사항

7) 계약 종료 이후 금융소비자가 청약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알리지 않고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는 보장성 상품: 가입 조건 및 보장내용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

사. 그 밖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워 민원이 빈발하는 사항 등 보험금 지급 등 서비스 제공과 관하여 일반금융소비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

2. 투자성 상품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

가. 투자성 상품(연계투자 및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9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)

1) 계약기간

2) 금융상품의 구조

3) 기대수익(객관적·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). 이 경우 객관적·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설명해야 한다.

4)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(최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한다) 및 그에 따른 손실 추정액. 이 경우, 객관적·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설명해야 한다.

5) 위험등급에 관한 다음의 사항

가)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

나) 해당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

6) 계약상 만기에 이르기 전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 계약이 종료되는 금융상품의 경우 그 요건에 관한 사항

나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9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: 다음의 사항

1) 기본정보

가)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
나) 집합투자업자의 명칭

다) 판매회사, 수탁회사 및 사무관리회사의 명칭

라) 집합투자기구의 종류

마) 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금액 및 만기일자

바) 판매일정, 환매일정, 결산 및 이익분배

2)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가)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

나)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투자대상자산

다) 투자구조 및 최종 기초자산(다른 집합투자증권이 편입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)

- 라) 레버리지(차입 등) 한도
 - 마) 여유자금의 운용방법
 - 바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 산정 방법
 - 사)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- 3)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에 관한 사항
- 가) 위험등급 및 관련 세부설명
 - 나) 위험요소
 - 다) 유동성 리스크 및 관리방안
- 4) 집합투자기구의 환매에 관한 사항(환매방법, 환매수수료를 포함한다)